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람	기 관 의 장

공 보

제1459호 2023년 4월 13일(목)

공 고

○ 속초 도시관리계획(시설: 도로 및 주차장) 결정(변경)(안) 공람·공고 ····· 2

발행 : 시 민 소 통 담 당 관 (전화 : 639-3750, FAX : 639-2799)

속초시 공고 제2023-382호

속초 도시관리계획(시설: 도로 및 주차장) 결정(변경)(안) 공람·공고

1. 속초시 도시관리계획(시설: 도로, 주차장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,
2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·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속초시청 미래전략과 도시계획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4월 13일

속 초 시 장

가. 공고목적: 속초 도시관리계획(시설: 도로 및 주차장) 결정(변경)(안) 공람・공고

나. 공고내용

1) 도시관리계획(도로: 소로3-334호선, 소로3-335호선) 결정(변경)(안)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(m)	기 점	종 점	사용형태	비 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
기정	소로	3	334	6	국지도로	543	노학동1271도	중로1-28 (노학동 400-1도)	일반도로	속고제2022-154호 (2022.9.30.)
변경	소로	3	334	4~6	국지도로	543	노학동1271도	중로1-28 (노학동 400-1도)	일반도로	속고제2022-154호 (2022.9.30.)
기정	소로	3	335	6	국지도로	245	노학동1271도	소로3-334 (노학동 471-2도)	일반도로	속고제2022-154호 (2022.9.30.)
변경	소로	3	335	6	국지도로	245	노학동1271도	소로3-334 (노학동 471-2도)	일반도로	속고제2022-154호 (2022.9.30.)

- 결정목적 : 현행 도시계획시설(도로)과 지적간 오차 발생으로 사유재산 침해가 발생되어 이에 대한 오차를 정정하고, 사유재산 보호를 위한 도로선형 일부 변경

2) 도시관리계획(도로: 소로3-140호선) 결정(변경)(안)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(m)	기 점	종 점	사용형태	비 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
기정	소로	3	140	5	국지도로	110	조양동1410-13도	조양동1411-9대	일반도로	강고제77-72호 (1977.4.19.)
변경	소로	3	140	6~11	국지도로	110	조양동1410-13도	청호동 444-28도	일반도로	강고제77-72호 (1977.4.19.)

- 결정목적 : 소로3-140호선의 일부 실효 예정인 도시계획시설(도로)의 재결정을 통한 도로 개설로 주민 보행안전 및 차량통행 불편 해소 등 교통환경 개선

3) 도시관리계획(주차장) 결정(변경)(안)

구분	도면표시번호	시설명	위 치	면적(㎡)			비 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
신설	-	주차장	청학동 482-519번지 일원	-	증)4,878	4,878	일반상업지역, 일반공업지역, 중요시설물보호지구

- 결정목적 : 군부대 이전에 따른 청학동 482-519, 482-536번지 내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부족한 주차장 확보

다. 공람기간: 공고일(신문게재일) 다음날부터 14일간

라. 공람장소: 속초시청 미래전략과 도시계획팀(☏ 033-639-2447)

마. 관계도서: 생략(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한 도서 참조)

바. 의견제출: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